

주간 규제 정보

Vol. 391

2022. 03. 28 ~ 2022. 04. 03



목차

국가기술표준원(<http://kats.go.kr/>)

1.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등 6종의 운영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3
2. 한국인 평균 키 40년 전보다 남 6.4cm, 여 5.3cm 커졌다 4
3. 생활 속 안전,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시험인증 서비스 개발 5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www.compass.or.kr)

4. 대만, 우선 관리 화학 물질에 대한 보고 범주 수정 6
5. EU, REACH 임시 지침 내 중간체 기준 수정 7
6. EU, 살생물제규정(BPR)에 따라 손소독제의 패키징 및 라벨링 정의 8
7. 미국 EPA, TSCA에 따른 8종 화학물질에 대한 추가적인 시험 요구 명령 발표 8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8. 유럽의회, 지속가능한 EU 배터리법 채택 9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국가기술표준원(<http://kats.go.kr/>)

1.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등 6종의 운영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0100호

타당성 평가 및 검증(ISO/IEC17029) 국제 인정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해 운영요령, 지침, 추가기술요건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등 6종의 운영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타당성 평가 및 검증(ISO/IEC 17029, 이하 “검증”이라 통칭) 국제인정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해 한국인정기구(KOLAS)의 인정분야에 검증을 추가하고, 인정을 위한 기준, 신청 및 평가서류, 평가사 자격요건 및 인정마크 등을 규정하고자 운영요령 개정 추진

2. 주요 내용

-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 한국인정기구의 인정 분야에 타당성 평가 및 검증을 추가하고, KOLAS 공인검증기관*의 정의를 추가
 - * (정의) 인정기구에서 규정한 인정기준 및 ISO/IEC 17029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인정기구로부터 타당성 평가 및 검증분야에 대한 인정을 획득한 기관을 말한다.
-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 검증기관 인정분류, 인정 및 평가기준, 인적자원 요구사항(기술책임자 및 실무자) 인정서 양식 추가 등
-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 검증분야 평가사 배정의 원칙, 샘플링 규칙 및 평가 양식 추가
- 「KOLAS 평가사 자격 등에 관한 운영요령」
 - 검증분야 평가사 등록 분야 설정, 교육 이수 요건, 평가사 승급 요건, 평가활동에 필요한 지식 및 스킬, 양식 개정(평가사 등록, 관찰평가, 설문조사)
- 「KOLAS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
 - 검증분야 평가사/종사자 교육 요건 및 교육 내용 추가
- 「KOLAS 인정마크 사용과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 검증분야 인정마크 및 도안 추가

3. 의견 제출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등 21종의 운영요령, 지침 및 추가기술요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적합성평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과

○ 전화 : 043 - 870 - 5496

○ 팩스 : 043 - 870 - 5679

○ 이메일 : kok0816@korea.kr

출처([국가기술표준원](#))

2. 한국인 평균 키 40년 전보다 남 6.4cm, 여 5.3cm 커졌다

- ‘롱다리’체형 증가, 남성 비만 늘고 35세 이상 여성 비만 감소 -
- 국표원,「제8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결과 및 성과 발표회」개최 -

지난 40여 년간 한국인 평균 키가 남성은 6.4cm, 여성은 5.3cm 커지고 ‘롱다리’ 체형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남성의 평균 비만도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반면 35세 이상 여성의 비만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30일 「사이즈코리아 성과발표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8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결과를 온·오프라인 동시진행으로 공개했다. 또한, 국표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산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날 웨어러블, 의료기기, 의류, 인체공학 관련 기관과 데이터 활용·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국인 인체치수조사는 의류, 생활용품 등 제품과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국민의 인체치수·형상 데이터를 수집·보급하는 세계유일의 국가주도 데이터 사업으로 ‘79년 이래 8회째*를 맞았다.

* 1979년 「제1차 국민표준체위 조사」 이후 약 5년 주기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 제5차 조사부터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이즈코리아)」로 명칭을 변경

※ (적용사례) 지하철 좌석은 1974년 이래 435mm의 크기가 유지되어 왔으나, 2017년부터 제7차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설계된 480mm 크기의 좌석이 보급됨

제8차 조사는 ‘20.5.~’21.12.(20개월) 20~69세 한국인 6,839명을 대상으로, 직접측정 137개, 3차원측정 293개 등 총 430개 항목측정을 실시했다.

이날 발표한 제8차 인체치수조사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균 키) 제8차 조사 결과 한국인의 평균 키는 남성 172.5cm, 여성 159.6cm를 기록했다.

고도 성장기를 지난 2000년대 이후로도 평균 키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결과, ‘79년 제1차 조사에 비해 남성은 6.4cm, 여성은 5.3cm 커졌다.

* 평균 키 변화(‘79→’86→’92→’97→’04→’10→’15→’21년)

- 남: 166.1 → 166.8 → 168.1 → 168.9 → 169.4 → 170.7 → 172.0 → 172.5cm

- 여: 154.3 → 154.1 → 156.5 → 156.6 → 156.7 → 157.4 → 158.3 → 159.6cm

(인체비율) 상체와 하체의 비율을 나타내는 다리길이 비율(살높이/키)이 모든 연령대에서 ‘03년 제5차 조사 대비 증가해, 키에서 하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이른바 ‘롱다리’ 체형으로의 변화가 지속되었다.

* 다리길이 비율 변화(2004 → 2021년) : 남(43.7% → 45.3%), 여(44.4% → 45.8%)

반면, 머리수직길이 대비 키의 비율을 나타내는 두신지수(키/머리길이)는 1990년대 이후 7.2 ~ 7.3을 유지하고 있으며 머리너비지수(머리너비/머리두께)는 모든 시대·연령·성별에서 동양인의 단두형 비율인 0.84 ~ 0.89 사이를 기록하는 등, 키와 몸무게 증가, 체형의 서구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체비율은 한국인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인구) 남성의 평균 체질량지수(BMI, 몸무게/키²)는 40여 년간 꾸준히 증가*해 남성의 절반가량(47.0%)이 비만인 반면, 여성은 '79년 22.0에서 '21년 22.6으로 22.0 ~ 23.1 사이에서 등락을 유지했다.

* 평균 BMI 변화('79→'86→'92→'97→'04→'10→'15→'21년도)

- 남: 22.1 → 22.7 → 23.2 → 23.3 → 24.3 → 24.4 → 24.8 → 24.9

- 여: 22.0 → 22.6 → 22.8 → 22.4 → 23.1 → 22.6 → 23.0 → 22.6

* 저체중(18.5이하), 표준체중(18.5~22.9), 과체중(23~24.9), 경도비만(25~29.9), 중도비만(30이상)

특히, 여성의 경우 5년전 제7차 조사 결과와 비교해 35세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비만도가 감소했으며, 50~60대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복부비만의 지표가 되는 허리둘레 역시 직전 조사결과('15년) 대비 남자는 전 연령대에서 증가했으며, 여자는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국표원은 이날 육군본부,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단국대학교 웨어러블 제조데이터 플랫폼센터, 대한인간공학회, 한국의류학회와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데이터 활용·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인 체형 변화와 인체치수조사 결과를 산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데이터 수요 발굴과 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양해각서 체결 후에는 주제발표회를 개최해 의료기기, 웨어러블 기기, 인간공학 분야 등 미래산업에 대한 협력방향을 모색하고,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비즈니스 모델 아이디어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제1차관은 “한국인 인체치수조사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국가 주도의 데이터 사업으로 40년간 축적한 데이터에는 격동의 시대를 거친 한국인의 인체 변천사가 담겨있다”면서, “한국인의 몸에 맞는 제품생산과 공간설계에 활용되어 우리 기업의 제품·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온 인체정보 데이터가 디지털 전환시대의 미래지향적 신산업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인체치수조사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 행사 영상과 전시품 등은 전용 온라인 플랫폼 (www.sizekorea2022.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3. 생활 속 안전,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시험인증 서비스 개발

- 국표원, 태양광 LED신호등 성능 시험, 인체 착용형 전자섬유 내구성 시험 등 7개 개발 과제 공고 -

국민 안전에 직결될 뿐 아니라 바이오헬스 등 향후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시험인증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개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태양광 LED신호등 성능 시험, 인체 착용형 전자섬유의 사용환경에 따른 내구성 시험 등 7개 시험서비스를 「유망 시험서비스 개발 사업*」 과제로 선정·공고했다.

* (유망 시험서비스 개발 사업) 시험인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시험방법과 절차를 개발하고, 관련 기업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인성적서 발급

국표원은 올해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발굴한 57개 수요 과제를 정책 부합성과 시급성, 기술성, 활용성 등을 중심으로 종합 평가해 7개 시험인증 서비스 개발 과제를 선정*했다.

* 기술수요조사('22.1.12.~1.25.) → 기획위원회(2~3월) → 사업심의회(3.24.~3.25.)

이번에 선정된 7개 과제는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안전 분야 3개 과제와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바이오헬스 분야 4개 과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안전) 도로상에서 갈림길, 급커브 등 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반사등보다 시인성이 뛰어나고, 전원공급이 어려운 산간지역에서도 설치가 가능한 태양광 LED신호등처럼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능 평가 시험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 ❶ 태양광 경보등의 안전 및 성능 시험, ❷ 테스트 해머를 활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압축강도 추정 시험, ❸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항만안전시설 시험인증 등 3개 과제

(바이오헬스) 국내외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고 다른 산업분야와 시너지가 기대되는 전자섬유의 인체 착용·사용상태에서 세탁, 땀, 물, UV 반복 노출에 대한 내구성 공인시험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국산 제품의 수출과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 ❶ 인체 착용형 IoT 융합 제품의 사용환경에 따른 내구성시험, ❷ 척추용 임플란트의 성능평가, ❸ 정온유통(콜드체인) 설비 시험, ❹ 감염병 예방 개인 보호구 시험 등 4개 과제

국표원은 과제를 수행할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에 지원과제 목록과 제반 지원방법을 게시하였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시험인증산업은 기업 경쟁력 제고와 국민 안전 향상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신뢰 기반 산업으로, 기업 성장과 생활 안전 향상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www.compass.or.kr)

4. 다만, 우선 관리 화학 물질에 대한 보고 범주 수정

대만의 1,148개 지정 우선 관리 화학 물질(PMCs*)을 수입, 사용 또는 공급하는 회사는 4월 1일부터 개정된 보고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해당 물질이 속하는 범주를 알아야 합니다.

* Priority Management Chemicals

이는 노동부(MoL*)가 지난해 6월 협의를 거쳐 11월 5일 우선관리화학물질의 지정·취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MoL은 올해 2월 14일 관보에 개정된 최종 규정을 게시했습니다. 업데이트된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Ministry of Labor

다음 수정 사항은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특정 위험에 대한 범주 분류
- 농도 한계
- 톤수 밴드

최근 개정에 따라 작업자 보호 보고 요건의 적용을 받는 PMC의 수는 1,173개에서 1,148개로 줄었고 규정에 따라 세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MoL은 대만 국가 표준(CNS*) 15030에 따라 물질 범주에 다음 하위 범주를 추가합니다.

* Taiwan National Standard

- 발암 물질, 돌연변이 유발 물질 또는 생식 독성 물질
- 카테고리 1 - 호흡기 과민성 물질
- 카테고리 1 - 심각한 눈 손상/눈에 대한 비가역적 영향
- 카테고리 1 - 특정 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PMCs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리적 또는 건강상의 위험이 있는 유해 화학 물질로 지정됩니다. 대만의 산업안전보건법(OSHA*)에 따라 PMCs를 취급하는 근로자는 이전 연도의 공정 활동에 대해 MoL에 통지해야 합니다.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442353/taiwan-to-revise-reporting-categories-for-priority-management-chemicals>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5. EU, REACH 임시 지침 내 중개체 기준 수정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생산 공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기준이 확대되면서 등록 의무가 가벼워지고, 허가 면제 혜택을 받는 중개체의 정의에 대한 지침을 수정했습니다. 승인을 위해 REACH** 및 CLP*** (CARACAL****)에 대한 관할 당국에 제출된 ECHA의 새로운 지침 초안은 REACH 제3조제15항에 제공된 중개체의 정의가 향후 개정될 때까지 "임시 정보 출처"가 될 예정입니다.

* European Chemicals Agency

**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Regulation

**** Competent Authorities for REACH and CLP

법원의 첫 번째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조건에는 중개체의 '의도된 목적'이 실제로 변형될 뿐만 아니라 다른 물질로 변형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필요성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는 합성으로 알려진 변형이 발생하는 '기술적 수단'의 개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특정 장비'에 대한 요구사항과 함께 물질이 '현장에서' 또는 '나중에 사용되는 현장에서' 운송 및 저장 중에 포함되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원의 '통제된 환경에 대한 물질의 외부로의 유출 차단' 조건이 첫 번째 기준뿐만 아니라 두 번째 기준에 명시된 조건과 연결되어 있는 세 번째 기준에 대한 ECHA의 해석이 좀 더 상세히 설명되었습니다.

ECHA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2월 기준으로 REACH에 따른 중간체 용도로의 등록은 19,434건이며 약 9,600가지 물질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443252/echa-updates-intermediates-criteria-in-stopgap-guidance-before-reach-revision>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6. EU, 살생물제규정(BPR)에 따라 손소독제의 패키징 및 라벨링 정의

2022년 3월 15일부터 16일까지 열린 EU 살생물제 관할청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손소독제의 패키징과 라벨링을 정의하였습니다.

* EU competent authorities (CAs) for biocides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손소독제 디스펜서(dispenser)와 리필 가능한 용기의 패키징과 라벨링에 관한 사항입니다. 합의사항에 따르면 디스펜서와 리필 가능한 용기는 손소독제와 별개로 그 위험성이 평가되어야 합니다. 이 디스펜서와 용기의 사용에 관한 내용은 제품 특성 요약(SPC)*에 특정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패키징 전체와 디스펜싱 펌프나 시스템에 관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 Summary of product characteristics

또한, 디스펜서와 리필 가능한 용기의 라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물질의 특성 및 양
- 사용 방법
- 효과를 보기 위한 최소 사용 시간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446634/biocides-authorities-agree-on-hand-disinfectant-measures>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7. 미국 EPA, TSCA에 따른 8종 화학물질에 대한 추가적인 시험 요구 명령 발표

미국 환경보호청(EPA*)는 현재 독성물질관리법(TSCA**)하의 우선순위물질(high-priority chemicals) 20개 중 8개의 물질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아래의 물질들이 '대기 중 및 수중에 미치는 환경 위험과 소비자 노출*'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정보는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테스트가 필요하면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 avian and aquatic environmental hazard and consumer exposure

해당 물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염소계 용제(chlorinated solvents)

- 1,1,2-trichloroethane
- 1,2-dichloroethane
- 1,2-dichloropropane
- trans-1,2-dichloroethylene
- o-dichlorobenzene
- p-dichlorobenzene

○ 난연제(flame retardants)

- TBBPA
- phosphoric acid, triphenyl ester (TPP).

본 내용은 2022년 3월 29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생산기업 및 가공업자 식별에 30일, 면제 요구에 65일, 연구 계획 초안 제출에 80일, 최종 시험 계획 제출에 110일이 소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449717/epa-to-require-additional-testing-on-eight-tsca-high-priority-chemicals>

<https://epa.gov/chemicals-under-tsca/epa-issues-additional-test-orders-support-risk-evaluations-eight-chemicals>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8. 유럽의회, 지속가능한 EU 배터리법 채택

- EU, 세계최초의 지속가능한 배터리 법안 입법 추진 중
- 탄소발자국, 라벨링, 실사, 재활용 함유 의무, 폐배터리 회수 등이 주요 골자로 EU 이사회 동의 후 연내 발효가 목표

개요

3월 10일, 유럽의회는 본회의에서 지난 2월 10일 의회 환경위원회(ENVI)가 채택한 EU 배터리 법안에 대해 찬성 584표, 반대 67표, 기권 40표 등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EU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의 역 내시장 판매 중지와 그린딜 구현을 위해 지속가능한 배터리 법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했고 이

에 집행위는 기존 배터리 지침(2006/66/EC)을 폐지하고 역내 제품감시규정(2019/1020)을 통합한 신 EU 배터리 규정안을 2020년 12월 마련했다. 집행위 법안 상정 후에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2022년 2월 10일 배터리 법안의 적용대상 확대, 폐배터리 회수율 목표 강화 등 기존 집행위 내용을 보다 강화시킨 수정안을 채택했다.

* (참고) EU 배터리 법안 추진 경과 : 집행위 법안 초안 발표(2020.12월) →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수정법안 채택(2022.2.10) → 유럽의회 본회의, 법안 채택(2022.3.10) → 이사회 표결(예정)

법안 주요 내용

EU는 배터리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재활용원료 비율 강화, △라벨링, △배터리 수거, △탄소발자국, △공급망 실사 등 지속가능한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규정 적용 대상 제품은 이동식(스마트폰, 전자기기 등), EV·차량용, LMT(전기자전거, 스쿠터 등)*, 산업용 등 모든 종류의 배터리가 해당된다.

주*: 경량운송수단(LMT; light means of transport)

충전식 산업용 및 내부 저장용량이 2kWh를 초과하는 전기자동차(EV)용 배터리의 경우 공급망 실사 의무가 부여되며, 배터리 함유 원자재의 공급망 추적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OECD 실사 가이드라인 부속서 II 적용이 필요하다(OECD 부속서 파일은 하단의 별첨 참조). 즉, 코발트, 흑연, 리튬, 니켈 및 그 외 배터리에 포함되는 화합물에 대한 원자재 정보, 원자재 공급기업 및 원산지 등 정보를 수집 및 보관해야 하며 공급망 내 인권·노동권·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식별, 예방 및 완화·해결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 실사는 EU 시장에 직접 배터리를 출시하는 제조사·유통사·수입자·대리인(Economic Operator)이 수행해야 하며, 제3자 독립기관을 통해 검증한 후 관련 증빙 문서를 보관해 둘 필요가 있다.

산업 및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의 경우에 2030년부터 코발트, 납, 리튬, 니켈 물질의 재활용 원료 사용이 일정 비율 의무화되며 2035년부터 해당 비율은 증가할 예정이다.

물질별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

'30년 1월 1일 부	'35년 1월 1일부
코발트 12%, 납 85%, 리튬 4%, 니켈 4%	코발트 20%, 납 85%(변동없음), 리튬 10%, 니켈 12%

자료: 유럽의회

배터리 라벨링 관련 기본적으로 CE 마킹이 필수적이며 2027년부터는 수명주기, 충전용량, 위험물질 포함여부, 수거정보 등의 정보 표기도 필요하다. 또한, 카드뮴(0.002% 이상) 또는 납(0.004% 이상)을 포함된 배터리의 경우, 2023년 7월부로 해당 화학기호(Cd, Pb)를 표기해야 하며 별도의 수거처리 여부도 명시돼야 한다. 이동식 배터리의 경우 2027년부터 최소의 수명주기 정보도 라벨에 포함되어야 한다. 집행위는 2025년 말까지 시행법령(implementing acts)을 마련해 제품별 구체적인 라벨 요구사항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전기자동차(EV) 및 내부 저장용량이 2kWh를 초과하는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의 경우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선언 및 등급이 도입되는데, 탄소발자국은 제조→소비→폐기 등 배터리의 전 밸류체인 과정에서 직·간접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CO₂로 환산한 총량을 지칭한다. EU는 탄소발자국에 대한 선언(carbon footprint declaration)을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집행위는 관련 산정방법 등 선언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2023년 7월 1일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2026년부터는 탄소발자국 등급이 표시된 라벨을 부착해 배터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할 예정이며, 집행위는 2024년까지 관련 세부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탄소발자국 등급 및 선언은 제품 기술문서(technical documentation)에 포함되어야 하며, EU는 일정수준 이하로의 탄소발자국 상한선도 마련할 방침이다.

<(참고) 기술문서(technical documentation)>

- EV 및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의 경우 기술문서 준비 필요
- 기술문서 포함 정보 : 제조자·생산기업 정보, 탄소발자국(kg), 탄소발자국 정보 열람가능 인터넷 링크 등
- 이외, 코발트·납·리튬·니켈을 함유한 차량 및 산업용 배터리의 경우, 해당물질정보를 기술문서에 포함 (2027.1.1부)

이 밖에도, 이동식 및 전기자전거(LMT) 배터리에 대한 폐배터리 회수율 목표 및 제품설계가 마련되었다. 2024년까지 수명이 다한 배터리를 소비자가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제품을 설계해야 하며, 폐배터리 회수율 목표의 경우 이동식(2025년 70% → 2030년 80%), 전기자전거(2025년 75% → 2030년 80%)로 설정되었다. 전기차 및 산업용 배터리에 대해서는 제품정보, 처리·재활용 정보를 담은 배터리 여권(Passport)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외 EU는 회원국별 감독기관을 지정하고 규제 이행에 대한 시장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조치는 EU 차원이 아닌 회원국별로 다르게 시행된다.

배터리 법안 관련 역내 업계 입장

업계	내용
Recharge* 유럽 첨단 충전식 리튬 배터리 산업연합	- 지속가능한 배터리 규제 수립은 에너지전환, 탈탄소화 등 그린딜 달성에 필수적이며, 입법을 통해 국제 표준 설정 기여 등 글로벌 시장 주도를 예상 - 다만, 유럽 배터리 산업이 아직 초기단계인 만큼, 다양한 혁신기술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기술규제는 유럽 산업경쟁력을 저해할 가능성 * Recharge : European industry association for advanced rechargeable and lithium batteries
Eurobat 유럽 배터리 제조연합	- 적용대상 품목을 배터리가 아닌 '완제품'으로 지정할 필요. 모듈, 팩 등 부품별로 행정비용을 부담시키는 것보다는 완제품 적용을 통해 기업부담을 경감해야 함 - 배터리 대상품목에 '내부저장용량' 문구 삭제 : 일부 조항에는 내부저장용량이 명시된 배터리만 적용되고, 일부 조항에는 아무것도 명시되지 않는 등 규정의 미통일로 해석에 불확실성 초래 - 폐배터리 재활용에 따른 수익을 제제조(Remufacturer) 기업이 갖게 되므로, 배터리 생산자보다는 제제조 기업에 재활용 처리 부담비용 부과 고려 - 제안된 법안 내 산업용 배터리의 범주가 광범위. 산업용 배터리의 경우, EV 또는 에너지저장용 배터리와 동일한 기술평가 이행이 어려움
ACEA 유럽 자동차 협회	- 한창 기술개발중인 단계에서 2030년 코발트·납·리튬·니켈의 재활용 원료 함유 의무비율을 지금부터 설정하는 것은 유럽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는 행위임. EU 리사이클링 기술개발 현황을 지켜보고 2025년쯤 목표를 설정할 것을 제안 - 실사의 경우, 현재 EU가 추진중인 공급망 실사 법안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기업에 이중부담을 안겨줄 가능성. 이에, 실사 관련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 - 폐배터리 수거 및 재활용에 대한 책임은 차량 제조기업이 질 수 없으며, 폐배터리 관리 관련 차량제조기업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할 것

자료: 협회 보도자료 및 현지 언론 종합

전망 및 시사점

이번 유럽의회가 채택한 배터리 법안은 이사회 표결을 두고 있으며, EU는 연내 법안 발효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법안 형태가 기존 지침에서 규정으로 바뀌면서 법적 구속력*이 높아졌으며, 추후 법안 발효 시 전 세계 최초의 '지속가능한 배터리 법'이 수립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참고: 지침(Directive)의 경우, 각 국가별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는 입법 행위이나 목표 달성 방안에 대해서는 개별국이 입법하며 규정(Regulation)은 구속력 있는 입법 행위로 EU 전역에 전체적으로 적용

EU는 미래먹거리 산업인 배터리에 대한 역외국 의존도를 줄이고 역내 경쟁력 증대를 위한 다양한 육성 정책을 시행 중이며, 배터리 법 제정을 통해 역내 배터리 기준을 국제 산업 표준으로 만들고 글로벌 시장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유럽 배터리 법안의 이사회 통과는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EU로 배터리를 수출중인 우리 관련 기업들은 입법동향을 주시하고 규제 내용에 맞춘 수출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참고> EU의 배터리 산업 육성 정책>

- EU의 전 세계 배터리 생산 점유 목표는 2020년 3% → 2030년 25%이나 2030년 역내 전체 배터리 수요의 30%만이 자체적으로 조달될 수 있다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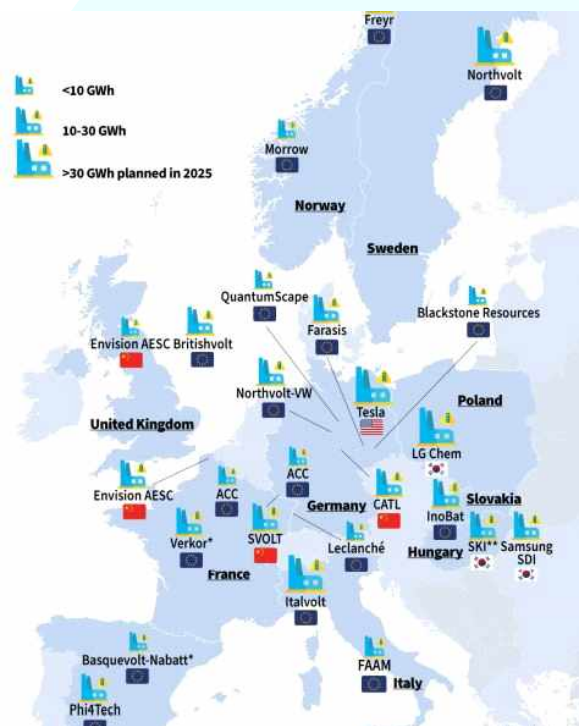
주*: 프랑스 정부 연구 발표 자료, '니켈, 리튬, 코발트의 역내 생산 20~30%에 그칠 것'(2022.1.10.)

- EU는 배터리 법 시행을 통해 2차 원료 수집 등 폐배터리의 재활용을 최대화하면서 역내 기가팩토리 건설, 공급망 다변화 및 역내 원자재 채굴 노력을 지속해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

- (기가팩토리): 프랑스, 스웨덴 등 생산공장 건설중이며 역내 및 영국 내 총 38개 기가팩토리 설립 추진 계획. 이 외 2021년 12월 최초의 유럽산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스웨덴, Northvolt사)

· Pascal Canfin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 위원장, '기가팩토리 건설이 예정대로 진행되는 경우, EU는 2025년 중국에 이어 세계 2대 배터리 생산지역이 될 것'(2021.2.4)

<EU 역내 기가팩토리 건설 플랜(2025년 462GWh 규모 생산 전망)>



자료: Transport & Environment

- (공급망 다변화) 아프리카(남아공) 및 칠레로부터의 공급선 모색
- (배터리연합, EU Battery Alliance): 집행위 주도 500개 이상 산학연 참여(2017년 10월 출범)

자료: EU 집행위, 유럽의회, T&E, 현지 언론 종합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